

「(재)구미문화재단 출연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 문화예술사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구미문화재단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원 지원 필요
- (재)구미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, 사업비 등 출연금을 2026 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기 관 명: (재)구미문화재단
- 소 재 지: 구미시 송정대로 120
- 조직/구성: 4팀 26명(현원: 4팀 25명)
- 출연금액: 5,200백만원
- 근 거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 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20조
 -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20조
 - 「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나. 주요 사업

□ 창작기반 활성화 사업

- 전문예술인 활동 지원 및 청년예술인 육성 사업
- 예술인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및 사업
-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역량 강화 사업
-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
-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기획 사업

□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

-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사업
- 지역 문화자원 콘텐츠화 사업
- 문화가 있는 마을 사업
- 시민문화 활동 지원 및 거리문화 활성화 사업

□ 문화예술공간 운영

- 구미청년상상마루,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, 구미영상미디어센터, 구미생활문화센터, 금리단길 각산살롱, 야외무대 공연 운영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구미시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성 강화와 창의적인 문화정책 및 문화예술 사업 발굴·육성을 위해 설립한 구미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 지원
- 구미시의 문화예술 경쟁력 제고와 자생력 있는 문화예술생태계 조성·지속적인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, 사업비 등 재원 지원 필요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20조
-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20조
- 「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출연안은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1)에 의거하여 (재)구미문화재단의 출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문화재단의 운영으로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강화하고, 지역 예술인·청년예술인 지원, 생활문화 확산, 문화공간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재단 출범 이후 초기 성과가 가시화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출연 재정 규모가 점차 확대²⁾되고 있는 만큼, 신규사업 도입과 기존 사업의 증액 사유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 국도비 공모사업과 민간 협력 확대 등 외부 재원 확보 노력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시비 의존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으므로, 자체 재원 다변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아울러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, 민원 응대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와 그 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성과평가 결과를 차기 출연규모와 시민 만족도 제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1)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) 구미문화재단 연도별 출연금 현황

2024년 예산액	2025년 예산액	2026년 요구액	비고
2,320백만원	4,000백만원	5,200백만원	